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2011.07.13 (수) 14:00

(재)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송장섭

(재)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1년 6월 30일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7월 7일

3. 제안 이유

-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업무를 위탁 및 수행한 사업에 대한 검사와 지도업무를 추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
(안 제6조제7호)

나. 진흥원 업무와 예산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할 수 있는 업무기능을 추가(안 제8조제2항)

5. 검토의견

- (재)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업무를 위탁 및 수행한 사업에 대한 검사와 지도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